

보호관찰 청소년의 환경요인 및 보호관찰 개입과 재범과의관계성 연구 - 비재범자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황진규[†]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본 연구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다양한 가정·사회환경 요인을 분석하고 보호관찰 사건관련 요인, 보호관찰 부과요인, 보호관찰 지도감독 관련 요인, 보호관찰 개입요인, 범죄경력관련 요인 등을 비교분석하여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재범방지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08년 소년법 개정 이후 소년에 대한 병합, 부과처분의 다양화와 소년법 적용 연령의 하향으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범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소년의 경우, 2008년 재범율이 9%에서 2009년 11.3%, 2010년 10.6%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율이 성인에 비해 약 2.5배 이상 높아 소년 재범자의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소년 재범방지대책 추진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이다. 기존의 재범분석은 비교집단을 설정하지 않았거나, 비재범자의 자료 수집 시 표본 추출상의 적정성 및 신뢰성이 문제로 노출되었다. 이러한 재범분석 결과의 신뢰성 부족으로 재범방지대책 등 효과적인 보호관찰 정책수립·시행을 위한 근거자료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졌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환경특성, 보호관찰 개입정도 등 비재범자군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재범자 특성 및 재범요인을 규명하고, 재범자 특성을 반영한 보호관찰 지도감독 실시 및 효과적인 재범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주요어 : 보호관찰 청소년의 환경요인, 보호관찰 개입과 재범, 비재범자와 재범자

[†] 교신저자 : 황진규,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박사과정,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525-2
Tel : 031-475-4590, E-mail : hjgyu@korea.kr

서론

보호관찰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난 20여 년 동안 보호관찰은 소년법에서 성인법으로의 제도 확대,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 성인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 및 청구전조사 실시, 벌금미납자 사회봉사명령제도 실시, 2008년 소년법 개정으로 인한 보호처분제도의 다양화 등 급속한 환경변화를 겪으면서 양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양적인 성장의 이면에 그간 우리나라 보호관찰 제도의 내실화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보호관찰 사건수의 증가¹⁾는 그만큼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사건수의 폭증을 가져왔으며, 이는 상담, 조사, 원호, 위기개입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능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게다가 보호관찰의 가장 큰 장점으로 여겨지고 낮은 재범율 또한 최근 들어서 소년재범의 증가에 따라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적으로 소년은 성인에 비하여 개선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관찰 지도감독 또한 소년대상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소년재범율의 증가는 그만큼 보호관찰 지도감독의 효과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지만 소년이 환경적 요인과 보호관찰관의 개입활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환경과 개입이라는 측면

1) 우리나라 보호관찰 도입 초기의 연간 사건수는 약 8,700건이었으나 20년이 지난 지금은 연간 약 160,000건으로 거의 20배에 육박할 정도로 사건수가 증가되었다.

에서 접근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제까지 보호관찰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있어왔지만 수감명령이나 보호관찰 프로그램에 대한 단편적인 분석들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보호관찰 지도감독의 어떤 요소가 재범억제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재범집단과 비재범집단의 비교를 통한 실증적인 분석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호관찰의 주요 성과지표인 재범을 기준으로 소년 재범집단과 소년 비재범집단을 구분하여 환경요인과 보호관찰 개입요인이 재범과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지를 검증함으로써 효과적인 재범억제 요인을 발견하고자 한다.

연구필요성 및 자료수집 방법

분석배경

연구의 필요성

최근 소년법의 개정²⁾에 따라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에서 병합²⁾·부가처분³⁾이 다양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년법 적용 연령이 하향⁴⁾ 조정

2) '08. 6. 「소년법」 개정²⁾에 따라 동법 제32조제2항에서 단기보호관찰(1년) 또는 장기보호관찰(2년)과 사회봉사·수감명령 병합, 단기보호관찰 또는 장기보호관찰과 감호시설위탁 병합, 장기보호관찰과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위탁 등의 병합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3) '08. 6. 「소년법」 개정³⁾에 따라 동법 제32조제1항내지제3항에서 단기보호관찰 또는 장기보호관찰과 대안교육·상담교육, 외출제한명령, 보호자 특별교육 등의 부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4) '08. 6. 「소년법」 개정⁴⁾에 따른 소년법 적용 연

표 1. 연도별 재범자수 및 재범률 현황

구 분	2007년 (재범률)	2008년 (재범률)	2009년 (재범률)	2010년 (재범률)
전체 재범자수	5,703 (6.4)	6,027 (6.5)	7,510 (7.6)	7,332 (7.2)
소년 재범자수	3,311 (9.1)	3,598 (9.0)	5,014 (11.3)	5,186 (10.6)
성인 재범자수	2,392 (4.6)	2,429 (4.6)	2,496 (4.6)	2,146 (4.1)

됨에 따라 소년 보호관찰대상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재범율이 높아지면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⁵⁾이 성인 보호관찰대상자에 비해 2.5배 이상 높아, 소년 재범자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소년 재범방지대책 추진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태이다.

기존 연구의 문제 인식

과거에도 재범에 대한 분석은 존재하였으나 기존 재범분석은 비교집단을 설정하지 않았거나 비재범자 자료수집 시 표본 추출상의 적정성 및 신뢰성 문제가 노출되어, 재범분석 결과의 신뢰성 부족으로 재범방지대책 등 효과적인 보호관찰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근거 자료로서의 활용도가 미흡하였다.

령이 하향(12세→10세)은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은 {(해당연도 재범자수/ 해당연도 보호관찰 실시인원수) X 100}으로 산정하며, 재범 판단기준은 구속, 불구속에 상관없이 검사의 중국처분을 기준으로 한다(구공판, 소년부송치, 가정법원 송치사건을 포함하되 불기소 처분 및 구약식 사건은 제외).

분석의 목적

환경 특성, 보호관찰 개입⁶⁾ 정도 등 비재범 군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재범자 특성 및 재범요인 규명하고, 재범자 특성을 반영한 보호관찰 지도감독 실시 및 효과적인 재범방지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의 수집

재범자 기초자료 수집

2010년 소년 재범자 5,186명 중 906명을 통계조사분석시스템 (SPSS)을 활용하여 무작위 추출하였으며, 이들 추출된 906명의 재범자평가표⁷⁾ 입력 자료를 수집하였다.

6) 분류, 직업훈련, 복학추진, 장학금 지원, 경제구호 등 원호, 현지출장지도, 출석지도, 특별프로그램 집행, 제재조치 등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의미한다.

7) '08. 2. 보호관찰비전연구팀에서 개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이 확정되면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연동된 재범자평가표를 입력하여 재범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왔으며, 기본사항, 지도감독 및 범죄전력 등 3개 요인, 소년, 성인 각 143개, 1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표 2. 비재범자 선정 기준 및 용어의 정의

<p>1. 비재범자의 선정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성별, 처분명(사건번호 중 처분번호)⁹⁾ 4자리 숫자 일치, 사범, 개시일자, 분류 등급 등 5가지 조건이 재범자와 동일해야 함. ※ 단, 다른 조건은 모두 일치하지만, 개시일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재범자의 개시일과 가장 근접한 시점에 개시한 비재범자를 선정 <p>2. ‘보호관찰 경과일(수)’의 개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재범자 평가표」에서 “보호관찰기간 경과일(수)”이란 비교대상인 재범자가 보호 관찰 개시일로부터 재범시점까지 걸린 기간을 의미(재범자평가표에서 ‘재범기간’과 같은 의미) ○ 비재범자에 대한 지도감독 횟수, 원호지원 여부, 준수사항 위반 횟수 등 산정 시, 보호관찰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보호관찰기간 경과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추출자료의 신뢰성 확보 예) 비교대상 재범자의 재범기간이 217일이고 비재범자의 보호관찰 개시일이 ‘10. 1. 7.이면, ‘10. 1. 7.으로부터 217일이 경과한 ‘10. 8. 11.까지만의 지도감독 횟수 등을 산정
--

비재범자 기초자료 수집

동일한 방법으로 2010년 소년 재범자 추출 인원과 동수인 906명의 비재범자를 비교집단으로 추출하였으며, 이들 비재범자 906명에 대한 비재범자평가표⁸⁾ 작성하였다.

이론적 배경

청소년 비행과 환경

비행이나 범죄와 환경의 연관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어 왔으며, 형사사법적 측

면에서는 소질과 환경에 대한 비결정론적 시각과 결정론적 시각의 대비로 나타났다. 비결정론은 인간은 누구나 자유의지를 갖고 있으며 범죄나 비행도 결국 자신의 선택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결정론적 시각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환경과 소질에 의해 이미 결정된 결과가 범죄로 표출될 뿐이라고 한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보호관찰과 관련하여서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활동에는 심성순화와 환경개선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소년의 경우 이점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호관찰의 이념상으로 결정론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사 비결정론에 따라 비행이 개인의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또다시 동일한 비행을 ‘선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는 보호관찰 활동의 특성은 결국 환경의 문제를 도외시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결정론과 비결정론의 어느 시각에 무게를 둔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년에 대하여는 환경적 요인이 비행과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에

- 8) 재범자평가표 구성 문항 중 비재범자와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7개 문항을 추출하여 구성하였다.
- 9) 보호관찰대상자의 사건번호는 기관번호 2자리, 연도 4자리, 처분번호 4자리, 일련번호 5자리(00-0000-0000-00000)로 구분되며, 처분번호 4자리는 단기보호관찰, 장기보호관찰, 임시퇴원 등의 주처분 유형과 사회봉사·수강명령 등 병과 처분의 유무에 따라 고유번호가 정해져 있다.

대하여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과 비행에 관한 이론

환경과 청소년의 비행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¹⁰⁾ 첫 번째는 결손가정의 중요성이다. Shaw와 Mckay(1932)는 비행집단과 통제집단에서 결손가정의 비율이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형식적 결손보다 기능적 결손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두 번째 이론적 관점은 Sutherland(1974)의 문화적접촉이론이다. 범죄행동은 학습되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접촉대상과의 상호작용의 빈도, 기간, 강도 등에 의하여 범죄발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세 번째 이론적 관점은 Merton(1968)의 아노미 이론으로 대표되는 긴장이론이다. Merton은 가족의 상호작용이 아노미를 느끼게 하고 결과적으로 일탈에 이르게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비행하위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네 번째 이론은 통제이론이다. Hirschi(1969)는 사회에 대한 개인의 유대가 약화되었을 때 비행행동이 일어나고, 특히 부모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들의 사회적 유대를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 있다.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 비행

부모의 아동에 대한 양육방식이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어떤 부모와 어떤 가정환경에서 자랐느냐가 청소년 비행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에 따르면, 가족들 간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이 화목한 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비행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부의 불화와 가족의 갈등적이고 적대적인 분위기가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의 주요 원인중 하나로 판단되었다. 한편, 병리적 가족문화를 조장하고 있는 비행소년의 부모는 자신들의 성격특성과 결혼관계 그리고 양육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Box et al., 1994)

서울소년분류심사원(1997)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부모의 훈육태도가 적절했다는 반응은 매우 일부이고 나머지는 방임, 익애, 일관성결여, 부모의 불일치, 거부 등 양육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영신과 김의철(1998)의 소년원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비행과 가정환경에 대한 연구는 비행청소년의 부모들은 자녀의 성취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격려하는 정도가 낮고 사회경제적 지위도 낮다고 지적한다. 또한 비행청소년은 부모의 통제가 많을 때 학업성취도가 높은 반면, 일반학생은 부모의 통제가 적을 때 오히려 학업성취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통제가 자녀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자녀의 비행여부나 성취정도에 따라 매우 다르게 작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 개인의 특성이 비행과정에서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박영신, 김의철(2000)에 의하면, 초·중·고등학생들의 일탈행동은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에 의해, 대학생은 부모의 성취지향적 태도 결여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았으며, 부모의 적대적 태도나 부모와의 갈등이 일탈

10) 이 분류는 1992년 노성호의 '한국 청소년 비행화에 관한 연구'에 따른 것임.

행동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준호, 노성호, 고경임, 최원기(1990)의 연구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이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적을수록,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도가 낮을수록 비행의 빈도가 높았다. 민하영(1992)이 소년원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도,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이고 거리감이 있을수록, 가족의 정서적 친밀도가 낮을수록 청소년들의 비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가정환경과 부모자녀관계

1994년 대전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무웅(2001)의 연구에서 나타난 보호관찰청소년의 가정환경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호관찰 청소년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족 수에 관계없이 월평균수입을 확인한 결과, 30만원 미만이 7.8%, 30~50만원 미만이 27.0%, 50~100만원 미만이 42.8%로 월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이 전체의 6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은 무학 3.0%, 초졸 38.0%, 중졸 30.0%, 고졸 23.4%, 대졸 4.2%로 전반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을 보였다.

부모의 부부관계에 대하여는 부모간 사이가 '매우좋다' '좋다'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전체의 69.8%로 비교적 부모사이가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상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 '상당히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가 90.0%로 나타나 대부분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의

생각이나 행동이 자신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매우 크다' '크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63%, '약간 영향을 미친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27.0%로 나타나 부모의 행동이나 생각이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반 청소년과 보호관찰 청소년의 부모학대 경험의 차이에 대한 김은희(2001)의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로부터 신체적 구타를 경험한 보호관찰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어머니로부터의 학대를 경험한 보호관찰 청소년은 일반청소년이 비하여 더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보호관찰청소년들의 경우 어머니의 통제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주로 아버지의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통제가 훈육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보호관찰 청소년과 청소년 보호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정재희, 2009)에서 청소년 비행 위험요인(가족적요인, 공격적요인, 정신건강요인, 일탈에 대한 태도요인, 친구요인), 보호요인(가족적요인, 또래적요인, 지역사회적요인, 학교적요인), 보호관찰 제도적요인(일반적 만족도 요인, 프로그램 만족도 요인, 유대관계요인)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 비행 위험요인이 낮을수록, 보호요인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적응에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비행 보호요인 중 가족의 지지나 영향이 클수록, 학교와의 관계성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적응에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행청소년들이 비행에서 탈비행으로 행동변화를 결심하는데 영향을 준 중요한 보

호요인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청소년들이 느끼는 다양한 경험, 부모를 포함한 가족전체의 분위기 등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한편, 다문화사회의 출현에 따라 가정의 구조가 달라지면서 다문화가정 출신의 보호관찰 청소년이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양현규(2010)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은 절대적·상대적 빈곤과 가부장적 부모관계, 모와의 의사소통 부재, 부모의 이혼과 가정결손 등 구조적 역기능이 일반 한국인 가정에 비하여 더욱 격렬할 것이라는 점에서, 다문화 가정은 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흑인이 차지하는 인구비율(약 12%)에 비하여 교도소 수감자나 보호관찰대상자의 비율은 그보다 3배 이상 높은 약 39% 내외를 오르내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향후 다문화 가정 환경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발생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보호관찰 청소년의 가정환경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구조적·기능적 결손이 일반 청소년에 비하여 높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보호관찰 개입의 효과성

보호관찰의 개입, 특히 재범억제와 관련하여 선진국에서는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다양한 기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Walters et al., 2007). 1900년대 초반부터 1950년대까지는 처벌 및 제재전략이 강조되었지만, 이는 인권 문제, 예산문제, 범죄오염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였을 뿐 실제 재범억제효과를 얻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1950년대부터 범죄자에 대한 재활(또는 재사회화)전략이 도입되었으나 이 또한 사회 내에서의 범죄율만 상승시켰을 뿐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1970년대 다시 처벌 및 제재전략이 도입되었으나 이 전략 역시 오히려 재범을 상승만을 가져왔을 뿐 재범 억제에 효과가 없자, 형사사법 분야의 연구자들은 진지하게 재범억제요인에 대한 연구(일명 ‘What Works’ 연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범죄자들이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제재단계에서 세 가지 요인(위험성-욕구-반응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Andrews et al., 1990). 즉, 재범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들의 범죄행동과 관련된 욕구들을 감소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범죄자의 성격, 능력 및 상황에 반응하는(적합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McMurrin, 2009).

우리나라에서도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처우방법이 도입되었고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처우방법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부족하였고 이를 체계적으로 내실화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성장시키는 노력이 부족한 편이었다.

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준수사항을 지키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일반, 주요, 집중으로 분류하여 지도감독의 밀도를 달리하여 보호관찰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효과적 재범억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심

성순화, 문화체험, 참관활동, 수강교육 등을 통하여 대상자의 성행을 개선하여 원만한 사회복귀를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개선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유연한 변화요소를 지닌 소년을 중심으로 편성되는 경향이 있다.

형사정책연구원 김지선(200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소의 대표적 청소년 프로그램 중 하나인 멘토링 프로그램은 미국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관계형성이나 개인적 발전에 목표를 두는 것과는 달리 재범감소 및 사회복귀라는 실질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체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이 참여한 멘티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보호관찰소에서 지속적으로 멘티를 선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상의 지원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호관찰소에게 범죄예방위원회에 비해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더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가출 청소년들과 보호관찰 중인 비행소년들을 중심으로 상담 및 강의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연구한 김장문(2008)은 가출의 동기보다는 가출 후 그들에게 닥쳐왔던 유혹이나 비행행동의 원인을 추적하면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상실과 자포자기 등 심리적 요인이 비행행동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을 알아냈다. 그에 따르면 일반 가출청소년에 비하여 보호관찰 청소년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 자아존중감 점수의 평균이 더 높게 상승하였다.

이무웅(2005)은 보호관찰 집행 방법을 법원의 처분 유형에 따라 통제적인 집행방법에 따른 독립적 보호관찰과 복지적 집행방법인 독립적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수강명령이 결합된 혼합적 집행으

로 분류하여 각각의 재범률을 분석한 후 통제적 집행방법과 복지적 집행방법을 적절하게 병행 집행하는 것이 재범예방에 효과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영미(2010)는 보호관찰의 개입활동별 재범억제 효과성을 분석하여 숙소알선, 직업훈련, 복학주선, 보호관찰 특별프로그램, 수강명령의 이행이 재범감소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반면 장학금지급과 경제구호는 재범과의 상관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다른 개입활동과 병행하여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회복적 소년사법에 대한 논의

다양한 처우기법의 도입과 그 효과성 분석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이 감소하지 않고 계속하여 사회적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되자 소년사법체계의 철학적 배경인 응보적인 형사사법에 대하여 진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재범억제 수단으로서 회복적 사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많은 범죄학 연구결과 및 미국의 경험이 보여주듯, 형벌의 양과 강도를 늘려서 범죄를 억제하려는 시도는 대체로 비효과적이었다. 최근 등장한 “회복적 사법” 모델은 전통적 제재 그 자체에 비해 처벌 목적 및 피해자 요구에 더 잘 부응하는 “제3의 길”로서 제시된다. 또한 이것은 단순한 처벌모델로의 회귀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회복적 사법은 처벌적·응보적 소송체계의 비효율성과 적대성 및 피해자 필요에 대한 배려부족 등을 문제 삼고, 대립적 소송과정을 통한 강제적 해결책의 부과(imposing)보다는 당

표 3. 비교분석 제외 요인 분석 현황

요인(개체수)	분석 결과(%)
성별(906)	- 남자(92.1) - 여자(7.9)
처분내용 (906)	- 임시퇴원(3.8) - 단기보호관찰(42.7) - 장기보호관찰(39.5) - 집행유예(7.5) - 선도위탁(6.5) ※ 사회봉사명령 부과율(31.2), 수강명령 부과율(34.3)
사범(906)	- 교통(10.0) - 절도(52.8) - 폭력(25.2) - 성폭력(3.9) - 강력(3.3) - 사기횡령(3.2) - 마약(1.2) - 풍속(0.4)
개시분류등급(906)	- 일반(20.5) - 주요(41.2) - 집중(36.8) - 추적(1.2) - 급외(0.2) - 미분류(0.1)
재범기간 (906)	- 1월 이내(12.8) - 3월 이내(25.6) - 6월 이내(25.7) - 1년 이내(29.0) - 1년 초과(6.9)
동종재범여부(906)	- 동종재범(46.1) - 이종재범(53.9)

사자들 상호의 이해와 합의에 근거한 문제의 해결과 치유를 강조한다. 회복적 사범의 핵심적 특성은 피해자 중심성에 있다. 응보의 적대적 시스템에서 피해자 역할은 필수적으로 축소되어 있고, 국가가 법률위반의 법적 피해자로서 전제된다. 범죄자와 국가가 형사소송과정의 당사자일 뿐이므로 범죄자가 실제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필요는 없으며, 책임의 문제는 국가관리에 기초한 양형기간으로 대체된다. 반면, 회복적 사범은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대해 책임지도록 한다.

형사사범 절차의 여러 단계 중 보호관찰이 회복적 사범 모델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도감독, 심성개선 프로그램,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집행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피해자와 사회에 반성과 사과, 배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복적 사범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효과적인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방지를

위한 새로운 이념으로서 이민수(2009), 이성철(2009) 등은 검사결정전조사단계 등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주요 분석내용

비교분석 제외 요인

소년법 대상자¹¹⁾가 86%였으며, 절도사범 비율은 52.8%이며, 분류등급은 집중(36.8%)보다 주요(41.2%) 대상자 비율이 높았고, 개시로부터 3월 이내 재범비율이 38.4%(누적비율)로, 성인(19.1%)에 비해 개시초기 재범률이 높게 나타났다.

동종 재범률은 46.1%로, 성인의 66.6%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1) '10년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실시인원 중 소년법 비율은 84.3%, 절도사범 비율은 42.7%이다.

표 4. 가정·사회 환경 요인 분석 현황

요인 (개체수)	응답 범주	비율(%)		유의수준 ¹²⁾
		재범자	비재범자	
직업 (1,812)	- 학생	45.7	53.3	<i>p</i> < .001
	- 무직	49.9	41.5	
	- 직업종사자	4.4	5.2	
중퇴경험 (1,812)	- 있음	66.4	51.2	<i>p</i> < .001
	- 없음	33.6	48.8	
학업성취도 (1,811)	- 상	0.4	1.9	<i>p</i> < .001
	- 중	8.3	20.2	
	- 하	91.3	77.9	
부모형태 (1,808)	- 친부모	44.5	55.4	<i>p</i> < .001
	- 한부모	37.4	33.8	
	- 계부모	11.8	7.4	
	- 부모없음	6.3	3.3	
부모직업 (1,798)	- 무직	18.7	11.9	<i>p</i> < .001
	- 농·임·수산업	2.4	3.1	
	- 자영업	16.3	18.7	
	- 직장인	21.7	28.3	
	- 단순노무	37.2	36.3	
	- 기타	3.6	1.7	
가족친밀도 (1,808) ※ 대화, 소통 등	- 높음	4.6	12.9	<i>p</i> < .001
	- 보통	45.3	63.1	
	- 낮음	50.1	24.1	
부모의 양육태도 (1,807)	- 허용적	18.2	33.1	<i>p</i> < .001
	- 지지적	11.7	27.6	
	- 방임적	64.2	35.7	
	- 권위적	5.8	3.6	
보호의지 (1,808)	- 높음	9.9	26.2	<i>p</i> < .001
	- 보통	57.3	58.8	
	- 낮음	32.8	15.2	
보호능력 (1,808)	- 높음	7.6	23.1	<i>p</i> < .001
	- 보통	53.9	54.7	
	- 낮음	38.5	22.3	
학대경험 (1,809)	- 있음	91.1	86.5	<i>p</i> < .001
	- 없음	8.9	13.5	
가족평균소득 (1,804)	범주없음 ※ 평균비교 분석 ¹³⁾	131만원	192만원	<i>p</i> < .001

가정·사회환경 요인 비교분석

직업 및 학업 관련 요인

재범자의 학생 비율은 45.7%로 비재범자보다 낮고, 무직 비율은 49.9%로 비재범자보다 높았으며, 학업성취도가 '하'인 비율 또한 재범자가 91.3%로 비재범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재범자의 중퇴경험 비율이 66.4%로 비재범자의 51.2%보다 높았다.

가족관련 요인

재범자 중 친부모 비율은 44.5%로 비재범자의 55.4%보다 낮고 부모의 직업과 가족소득 또한 재범자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재범자에 비해 재범자는 가족 간 대화, 소통 정도,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이 낮았고, 방임적으로 양육하는 비율(64.2%)이 높았으며,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학대 경험이 있는 비율은 각 91.1%, 86.5%로 재범자집단의 훈육환경이 더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호관찰 사건 관련 요인 비교분석

- 12) 변수간의 분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추정하는 유의수준으로 ($p < .05$)는 95%, ($p < .01$)은 99%, ($p < .001$)은 99.9% 신뢰수준을 나타낸다. 즉, 유의수준이 ($p < .05$) 이상을 보이면 두 변인간의 관계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13) 두 집단의 표본 평균을 비교하여 집단간 차이를 검정하는 통계분석 방법으로 독립적인 두 모 집단의 평균 차이를 분석하는 독립표본 검정과 동일한 모집단 내의 두 표본간 평균 차이를 분석하는 대응표본 검정이 있다. 본 재범분석은 독립표본 검정이며, 교육 전후 인식 차이 등을 분석하는 기법이 대응표본 검정에 해당한다.

특별준수사항, 사회봉사·수강명령 관련 요인

외출제한명령 등 특별준수사항, 사회봉사·수강명령 부과 여부와 재범과의 관계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봉사·수강명령 완료 비율이 비재범자가 높게 나타나, 명령 집행 완료 여부와 재범과의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앞선 이영미(2010)의 연구에서 수강명령 완료자의 재범률이 낮게 나온 것과 혼합적 집행방법이 효과적이라는 이무웅(2005)의 지적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만 재범자의 경우 사회봉사·수강명령 기간 중의 재범으로 명령집행을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비재범자에 비하여 높다는 점은 통계해석상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범행계획성 및 책임수용성 관련 요인

재범자의 계획적인 범행 비율이 70.6% 비재범자의 65.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범행 책임을 회피하는 비율은 재범자가 38.4%로 비재범자의 9.2%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재범자가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책임의식이 더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비재범자는 30.4%가 피해자와 합의한 반면, 재범자는 21.1%에 그쳐 재범자의 피해회복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점은 가해행위에 대한 공감능력의 부족과 함께 열악한 경제형편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회복능력 부족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범 관련 요인

보호관찰 사건 당시 공범관계가 있었던 비율은 각 55.8%, 70.1%로, 비재범자의 공범 비율이 높았다. 이에 따라 비재범자의 비행이

표 5. 보호관찰 사건 관련 요인 분석 현황

요인 (개체수)	응답 범주	비율(%)		유의수준
		재범자	비재범자	
특별준수사항 부과(1,805)	- 부과됨	49.0	50.4	<i>p</i> =.294
	- 부과되지 않음	51.0	49.6	
사회봉사명령 부과(1,812)	- 부과됨	31.2	32.5	<i>p</i> =.307
	- 부과되지 않음	68.8	67.5	
수강명령부과 (1,812)	- 부과됨	34.3	34.4	<i>p</i> =.500
	- 부과되지 않음	65.7	65.6	
사회봉사명령 이행 (583)	- 이행완료	76.0	96.0	<i>p</i> <.001
	- 미완료	24.0	4.0	
수강명령이행 (622)	- 이행완료	70.1	96.1	<i>p</i> <.001
	- 미완료	29.9	3.9	
보호관찰사건범행계획성 (1,812)	- 과실	2.6	3.0	<i>p</i> <.05
	- 우발적	26.7	32.0	
	- 계획적	70.6	65.0	
보호관찰사건 책임수용성 (1,812)	- 회피적	38.4	9.2	<i>p</i> <.001
	- 수용적	61.6	90.8	
보호관찰사건공범 (1,811)	- 있음	55.8	70.1	<i>p</i> <.001
	- 없음	44.2	29.9	
보호관찰사건 피해자 합의 (1,808)	- 합의	21.1	30.4	<i>p</i> <.001
	- 미합의	25.2	21.1	
	- 미상	46.6	42.1	
	- 피해자 없음	7.2	6.4	

집단성을 띠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다르게 보면 비재범자의 경우 교우관계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비주도적인 형태로 비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재범자의 범죄계획성이 낮게 나타나는 점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공범여부와 함께 비행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느냐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보호관찰 개입(지도감독)관련 요인 비교분석

분류 관련 요인

재범자의 분류등급은 일반, 주요, 집중 각 20.5%, 41.2%, 36.8%이고, 비재범자는 각 10.0%, 37.3%, 46.6%로 재범자에 대한 집중보호관찰 지정 비율이 비교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개시분류 등급으로 비재범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통한 재범방지가

표 6. 보호관찰 개입 관련 요인 교차분석 현황

요인 (개체수)	응답 범주	비율(%)		유의수준
		재범자	비재범자	
직업훈련 (1,812)	- 지원함	1.5	4.3	<i>p</i> <.001
	- 지원하지 않음	98.5	95.7	
복학주선 (1,812)	- 주선함	2.1	3.6	<i>p</i> <.05
	- 주선하지 않음	97.9	96.4	
장학금지원 (1,812)	- 지원함	2.9	7.9	<i>p</i> <.001
	- 지원하지 않음	97.1	92.1	
경제구호 등 원호 (1,812)	- 지원함	14.2	19.5	<i>p</i> <.01
	- 지원하지 않음	85.8	80.5	
구인장발부 (1,802)	- 발부함	7.7	1.0	<i>p</i> <.001
	- 발부하지 않음	92.3	99.0	

효과적이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원호지원 관련 요인

직업훈련, 장학금 지원 등 원호 실시 비율이 재범자보다 비재범자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이점은 이영미(2010)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다만 재범자 그룹이 대체로 보호관찰관의 개입에 비순응적이기 때문에 원호활동에서 비재범자 그룹에 비하여 소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구인장 발부 관련 요인

재범자 중 7.7%, 비재범자 중 1.0%가 구인장이 발부되었다. 구인장은 기본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발부되는 것이나 상당수의 준수사항 위반이 재범을 포함하고 있어서 구인장 발부 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개시 초기 지도감독 관련 요인

개시 후 최초 현지지도 시점이 재범자는 50.26일을 경과하여 실시한 반면, 비재범자는 26.94일 경과 후 실시하였고, 개시 후 3개월까지 현지지도, 출석지도, 특별프로그램 실시 횟수가 재범자보다 비재범자가 높게 나타났다. 이점은 개시 후 6개월 이내의 재범자 비율이 약 70%에 이른다는 점에서 초기 지도감독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 출석지도횟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지 않음(*p*=.194)

재범확정 전 지도감독 관련 요인

개시로부터 재범확정 시까지 현지출장 횟수는 각 3.23회, 5.55회로 재범자에 비해 비재범자가 높고, 출석지도 및 특별 프로그램 횟수도 비재범자가 높게 나타났다.

준수사항 위반 관련 요인

주거지 무단이탈 횟수는 각 0.80회, 0.11회,

표 7. 보호관찰 개입 관련 요인 평균비교분석 현황

요인 (개체수)	평균		유의수준
	재범자	비재범자	
개시 후 최초 현지지도 시점까지 경과일수(1,812)	50.26	26.94	$p < .001$
개시 후 3월까지 현지지도횟수 (1,811)	2.11	3.17	$p < .001$
개시 후 3월까지 출석지도횟수(1,812)	3.80	3.95	$p = .194$
개시 후 3월까지 특별프로그램 횟수(1,812)	0.03	0.23	$p < .001$
개시로부터 재범확정 시까지 현지출장횟수 ¹⁴ (1,812)	3.23	5.55	$p < .001$
개시로부터 재범확정 시까지 출석지도횟수(1,812)	5.27	7.18	$p < .001$
개시로부터 재범확정 시까지 특별프로그램 횟수(1,811)	0.04	0.32	$p < .001$
주거지 무단이탈횟수(1,812)	0.80	0.11	$p < .001$
특별준수사항 위반횟수(903)	3.79	2.31	$p < .05$
출석요구서 발부 횟수(1,791)	0.46	0.25	$p < .001$
경고장 발부 횟수(1,794)	0.75	0.35	$p < .001$

표 8. 범죄경력 관련 요인 평균비교분석 현황

요인(개체수)	평균		유의수준
	재범자	비재범자	
최초 범죄연령 만 나이(1,755)	14.92	15.11	$p < .01$
총 범죄경력 횟수(1,812)	2.41	2.15	$p < .05$
동종 범죄경력 횟수(1,788)	1.95	1.23	$p < .001$

특별준수사항 위반 횟수는 각 3.79회, 2.31회로, 재범자의 위반 횟수가 높았고, 출석요구서, 경고장 발부 횟수 또한 재범자가 높게 나타났다.

최초 범죄연령 관련 요인

최초 범죄 시점은 각 14.92세, 15.11세로, 재범자가 비교집단보다 더 일찍 범죄를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경력¹⁵⁾ 관련 요인 비교분석

14) 비재범자에 대한 현지출장 등 지도감독 횟수는 비교집단인 재범자가 개시로부터 재범확정 시까지 걸린 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서 실시한 지도감독 상황만을 반영하였다.

범죄경력 관련 요인

총 범죄경력은 각 2.41회, 2.15회, 동종 범죄경력은 각 1.95회, 1.23회로 재범자의 범죄경력

15) 범죄경력 산정 시 본 보호관찰 사건은 제외하였다.

횟수가 비교집단보다 높았다.

결론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자의 특성

보호관찰 청소년의 환경요인으로는 소년범 대상자가 86%였으며, 사범별로는 절도사범 비율이 52.8%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보호관찰 개시로부터 3월 이내 재범비율이 38.4%로 초기 재범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직업 및 학업 관련 요인은 재범자의 학생 비율은 45.7%로 비재범자보다 낮고, 무직 비율은 49.9%로 비재범자보다 높았으며, 학업성취도가 ‘하’인 비율 또한 재범자가 91.3%로 비재범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족관련 요인으로는 재범자 중 친부모 비율이 44.5%로 비재범자의 55.4%보다 낮고 부모의 직업과 가족소득 또한 재범자가 열악하게 나타났다. 특별준수사항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부과여부와 재범의 관계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사회봉사·수강명령 완료비율이 비재범자가 높게 나타나, 명령집행 완료 여부와 재범과의 관계성은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분류관련 요인으로는 재범자의 분류등급이 일반, 주요, 집중 각 20.5%, 41.2%, 36.8%이고, 비재범자는 각 10.0%, 37.3%, 46.6%로 재범자에 대한 집중보호관찰 지정 비율이 비교집단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직업훈련, 장학금 지원 등 원호 실시 비율이 재범자보다 비재범자가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개시 후 최초 현장지도 시점이 재범자는 50.26일을 경과하여 실시한 반면, 비재범자는 26.94

일 경과 후 실시하였고, 개시 후 3개월까지 현장지도, 출석지도, 특별프로그램 실시횟수가 재범자보다 비재범자가 높게 나타났다.

준수사항 위반 관련 요인은 주거지 무단이탈 횟수는 각 0.80회, 0.11회, 특별준수사항 위반횟수는 각 3.79회, 2.31회로 재범자의 위반횟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최초 범죄 시점은 각 14.92세, 15.11세로 재범자가 비교집단보다 더 일찍 범죄를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방지 대책(분석결과를 토대로)

보호관찰 개시 초기 적극 개입

보호관찰 개시로부터 3개월간 재범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개시 후 3개월간은 ‘주요’ 등급 이상으로 분류처우를 실시하고, 개시 초기 가족, 교사, 고용주 등 관계인과의 유대관계 형성을 통한 대상자 관련 정보의 신속한 수집 및 개입을 강화하여야겠다.

무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

보호관찰 청소년의 무직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복학추진, 검정고시 지원, 직업훈련 등 개별 환경에 맞는 원호 지원을 강화하고, 무직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자에 대해서는 범죄예방위원 또는 상담전문가, 사회복지사 등과 1:1 멘토링 결연을 적극 추진하여야겠다.

임시퇴원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 실시

소년원과의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를 유지하여 재원 중 특이사항 등 다양한 대상자 정보를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반영하고, 보호관찰과 병행하여 재원 시 소년보호위원과의 멘토

링을 해당위원의 주거지 등을 고려, 임시퇴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겠다.

재범위험성에 맞도록 적절한 분류 실시

「보호관찰대상자 분류감독지침」에 따른 과학적·객관적 분류를 실시하고 이를 지도감독 결과에 반영한 후 주기적으로 재분류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범위험성이 높은 집중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강화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도감독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한다.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특별준수사항 적극 부과 추진

야간의출제한명령, 음주·약물 금지 등 대상자 개별 특성에 맞게 특별준수사항이 부과 되도록 법원 등에 적극 요청하고,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스템 활용과 함께 주·야간 현지출장 및 통신점검을 병행한 외출제한명령 이행 감독 강화 및 불시 소변검사, 음주측정기를 활용한 약물·음주여부 확인, 무면허 운전 감독 등 특별준수사항 부과 유형별 이행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한다.

소년 장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특별 준수사항 부과 확대 추진

소년 장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는 소집단 장기 프로그램 지속 집행을 통한 범죄성향 개선 도모 및 직업훈련, 검정고시 지원 등 중기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한다. 그리고 특별준수사항 부과, 준수사항 추가·변경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대한 이행감독을 강화하여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적극 활용하여야겠다.

보호관찰대상자 지원체계 강화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등과 연계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확대 및 범죄예방위원, 청소년 상담실, 지방자치단체 등 기존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자원을 다양하게 발굴하여야한다. 그리고 단편적·일회성 지원을 탈피, 대상자의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속적·실질적인 원호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 상담실, 대학 등 상담·프로그램 집행전문자원을 다양하게 확보하여 특별프로그램 집행에 적극 활용하여야한다.

연구의 한계 및 추가적 연구 필요성

본 연구는 재범을 저지른 보호관찰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비하여 분석하면서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봐왔다.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과 적극적 개입과 원호활동이 재범억제에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가정 이외에 일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분석자료 해석의 한계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계량적 지표들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대한 검토가 없어서 각 지표 간에 어느 요인이 더 중요한 상관관계를 갖는지에 대하여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와 함께 환경과 개입 이외에 보호관찰 청소년 개인의 인성이나 행동특성 등 심리학적 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연구결과의 해석을 제약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등 청소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영역의 변수를 반영하여야 하겠다. 또한 보호관찰 청소년의 인성에 따른 재범가능성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지표들에 대하여는 각 지표가 재범에 미치는 정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보호관찰 자원을 어떠한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환경, 개입 등 계량적 지표 이외에 심리특성 등 비계량적 지표에 대하여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연구들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단기적 분석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보호관찰 종료 후 3~5년에 이르는 기간까지의 결과를 추적함으로써 보호관찰 개입이 장기적 재범억제에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김경모, 박길수, 유전희, 허정일 (2010). 효과적인 보호관찰을 위한 동기강화 면담기법 매뉴얼. 2010 보호관찰 정책연구 자료집, 1-50.

김양곤, 김철호 (2005). 보호관찰대상자의 유형별 처우방안. 보호관찰연구회 연구논문, 31-82.

김은경 (2006). 청소년 비행예방 종합대책수립을 위한 정책제언. 보호, 18, 7-58.

김용세 (2003). 한국의 형사사법체계와 회복적 사법. 형사법연구, 20, 347-373.

김은희 (2001).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자녀 학대와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일반청소년과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구 카톨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장문 (200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가출 및 보호관찰 청소년을 중심으로. 초당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준호, 노성호, 고경임, 최원기 (1990).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공부압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범죄연구 1.

김지선 (2002). 비행청소년을 위한 멘터링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선 (2005). 법원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도중진, 이진국, 윤동호, 이순래 (2005). 소년사범의 적절한 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민하영 (1992). 한국의 청소년 비행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영신, 김의철 (1998). 청소년 비행과 성취행동: 가정환경, 귀인양식, 건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문제심리학.

박영신, 김의철 (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초·중·고 대학생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8(2), 109-147.

보호관찰비전연구팀 (2008). 재범자특성자료 분석서. 2008 보호관찰비전연구, 285-498.

서울소년분류심사원 (1997). 비행소년의 분류심사: 분류심사 통계 및 사례, 제18집.

양현규 (2010). 다문화 가정 청소년 비행에 대

- 한 보호관찰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10(1), 127-175.
- 이무웅 (2001).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지, 1(1), 151-168.
- 이무웅 (2005). 보호관찰 집행방법에 따른 대상자의 재범률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민수, 이장규 (2009). 상담조사 및 기소결정 전 조사에 있어서 회복적 사범도입에 관한 연구: 제25조의3(화해권고)를 중심으로, 소년보호논집, 제9집, 555-629.
- 이성철 (2005). 재범자 특성연구 및 보호관찰 전문화 방안. 보호관찰연구회 연구논문, 83-135.
- 이성철 (2009). 한국 보호관찰에서의 회복적 사범의 적용실태와 전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영미 (2010). 보호관찰서비스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진수명 (2001). 집중보호관찰활동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진수명, 장규원, 정현미, 박철현 (1999). 보호관찰대상자의 과학적 분류처우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가정환경과 청소년 비행.
- Andrews, Donald A. (2006). Enhancing adherence to risk-need-responsivity: Making quality a matter of policy. *Criminology & Public Policy*, 5, 595-602.
- Arsenio, W. F., & Fleiss, K. (1996). Typical and behaviorally disruptive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emotional consequences of socio-moral event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4, 173-186
- Box, S., Copely, B., Magagna, J., & Smilansky, J. M. (1994). *Crisis at adolescence*. New Jersey: Jason Aronson INC
- Carter, P. (2003). Managing Offenders, Reducing Crime(The Carter Review). *London: Home Office*.
- Dr. Ira M. Schwartz. (2009). Juvenile Probation in the United States: Current Practices and How It Can Be Improved. *Korean Journal of Probation*, 9, 7-33.
- Dr. Mike Nash. (2009). Public Protec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English and Welsh Probation Service. *Korean Journal of Probation*, 9, 55-76.
- Gottfredson, M. R. & T. Hirschi. (1990). A Gene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 차원고접수 : 2011. 5. 31.
심사통과접수 : 2011. 7. 14.
최종원고접수 : 2011. 7. 28.

Study about environmental factor for youths under protective supervision and relationship between protective supervision and second conviction

Jin-Gyu Hwang

Department of Criminal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variety of family and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of youths under protective supervision and compare main causes for cases that ended up with protective supervision, added factors for protective supervision, factors associated to protective supervisor, intervention to protective supervision and factors for criminal records and thereby find out most suitable plans to prevent second offense. After reenactment of juvenile law in 2008, the subjects for protective supervision are in increase due to merging of youths, diverse added legal disposition and declining of age for application of juvenile law, and due to such factors, second offense is also in increase. For boys, second offense was at 9% in 2008 but it increased to 11.3% in 2009 and 10.6% in 2010. Also, because second offense among youths under protective supervision is higher than the adults by factor of 2.5, the need for study to systematically analyze characteristics of second offenders and establish plans to prevent such second offenses. Tradition studies in second offenses either did not establish groups for comparison nor had credibility or suitability issues when extracting samples while collecting information on non-second offenders. So their usage as supporting information was low in terms of establishing plans to prevent second offence etc. Through comparatively analyzing against non-second offenders in terms of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youths under protective supervision, level of intervention in protective supervision etc, this study was prepared to define factors behind second offenses, start protective supervision programs that reflects characteristics of second offenders and establish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second offenses.

Key words : Environmental Factor for Probation Youths, Protective Supervision and Second Conviction, Conviction and Second Conviction